

1

채무조정 제도별 비교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개인)	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근거법	서민금융법	채무자회생법
신청비용	5만원 (기초수급자 등 무료)	평균 150만원* (송달료, 인지대 등)
독촉중지	접수 + 1일(평일기준)	약1~2개월
소요기간	평균 2개월(신청~확정)	6개월 이상(신청~인가)
구비서류	신분증	신분증 외 증빙서류
조정대상	협약 기관 채무 (약7,000곳)	모든 채무
기타	보증인 보호	보증인 비보호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계 시 송달료, 인지대 등 전액 지원

2

신용회복위원회 사업 (서민금융법 제60조)



채무조정 지원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 제도 신청 지원 등

상담방법

대면(방문) 상담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7:00
- 필요서류 : 신분증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전화 예약 후 방문

비대면 상담

1 모바일 앱(App)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앱(APP) 다운로드/설치

- 상담방법 : 앱에서 본인인증 후 상담 신청

2 웹(Web) 사이트 상담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접속

- 상담방법 : 본인인증 후 홈페이지 상담 신청

3 콜센터 전화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상담전화

1600-5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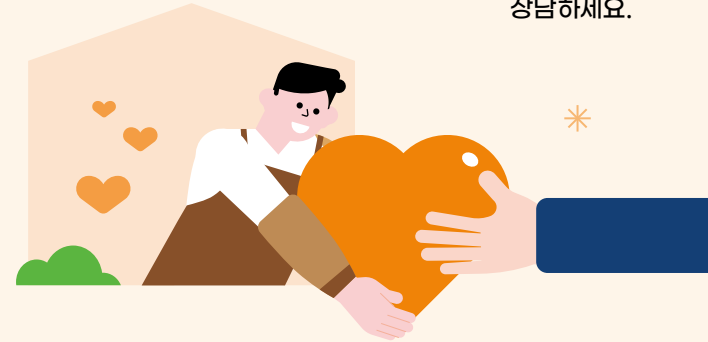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한국어

값기 힘든 빛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개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맞춤 채무조정

독촉 중단

압류 금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법에 따라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채무조정 등을 통해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빛이 많아 힘드신가요?
빛 독촉을 받고 계신가요?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연체 기간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과
독촉 중단, 압류 금지 등의 조치로
일상생활을 찾아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채무종합상담기구로서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채무조정, 법원제도 연계, 취업·복지 연계 등 복합 지원을 통해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체우려(0일) 또는 연체 1~30일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신속채무조정



공통

- * 단기연체 해제, 연체정보등 미등록
- * 상환방식 : 원리금 분할 상환
- * 적용이율 : 약정이율(상한 연15%)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 상환유예 : 최장 3년(약정이율, 상한 연15%)

특례

- * 대상자 : '25.12월 이내 신청자
- * 적용이율 : 약정이율의 30~50% 인하
(상한 연15%, 하한 연3.25%)
단,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이상자의 경우
최대 0~15% 범위 내 원금 감면
- * 상환유예 : 최장 3년(상한 연3.25%)

새출발기금

신속채무조정

소상공인
·
자영업자

- * 단기연체 해제, 연체정보등 미등록
- * 상환방식 : 원리금 분할 상환
- * 적용이율 : 약정이율(상한 연9%)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 거치기간 : 최장 1년(약정이율, 부동산담보 3년)
- * 상환유예 : 거치기간 포함 최장 3년
(약정이율, 상한 연2%)

연체 31~89일
(‘연체정보등’(옛 신용불량정보) 등록 전 지원이 필요한 분)

사전채무조정



공통

- * 단기연체 해제, 연체정보등 미등록
- * 상환방식 : 원리금 분할 상환
- * 적용이율 : 약정이율의 30~70% 인하
(상한 연8.0%, 하한 연3.25%)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 상환유예 : 최장 3년(연2% 이자율)

특례

-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이상자
- * 상환방식 : 원금 분할 상환
- * 채무감면 : (연체)이자 감면 및 미상각채권 0~30%,
상각채권 0~80% 범위 내 원금감면

새출발기금

사전채무조정

소상공인
·
자영업자

- * 단기연체 해제, 연체정보등 미등록
- * 상환방식 : 원리금 분할 상환
- * 적용이율 : 연3.9~4.7%(상환기간 연동)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 거치기간 : 최장 1년(약정이율, 부동산담보 3년)
- * 상환유예 : 거치기간 포함 최장 3년
(약정이율, 상한 연2%)

연체 90일 이상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이신 분)

개인워크아웃



공통

- * 연체정보등 해제, 공공정보(1101) 1년간 등록
- * 상환방식 : 원금 분할 상환
- * 채무감면 : (연체)이자 감면 및 미상각채권 0~30%,
상각채권 0~90%* 범위 내 원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5%p 가산 감면
- * 상환기간 : 최장 8년(차상위계층 10년)
- * 상환유예 : 최장 3년(연2% 이자율)

특례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 * 연체 해제 후 공공정보 등록(미공유)
- * 채무조정(감면기준 상등) + 재창업자금 지원
(최대 30억원)

새출발기금

일반

소상공인
·
자영업자

- * 연체정보등 해제 후 공공정보(1802) 1년간 등록
- * 새출발기금(주) 비협약채무 + 담보대출(원리금 상환)
지원
- * 상환방식 : 채무성격에 따라 상이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 거치기간 : 최장 1년(부동산담보 3년)
- * 상환유예 : 거치기간 포함 최장 3년(연2%)